

충남대학교 학칙

제89차 개정 2024. 1. 22. 규정 제2125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창의개발·봉사 정신이 풍부한 인격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하며, 각 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조직

제 1 절 총장·부총장 **제3조(총장) 제3조의2(부총장대학원장)**

제 2 절 교육 조직

제4조(단과대학)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과대학 및 직할학부(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23., 2014.2.17., 2014.3.31., 2021.8.30.)

1. 인문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자연과학대학 4. 경상대학 5. 공과대학 6. 농업생명과학대학 7. <삭제> (2018.2.28.)
8. 약학대학 9. 의과대학 10. 생활과학대학 11. 예술대학 12. 수의과대학 13. 사범대학 14. 간호대학
15.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6. 자유전공학부 17. 국가안보융합학부 (개정 2018.2.28.) 18. 국제학부 <신설 2022. 3. 1.>

제4조의2(공유대학)

제5조(일반대학원 등) 본교에 그 주된 교육 목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4차 개정 2016.6.1)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가.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2009.2.23.) 나. 삭제 <2022 .8. 31.> 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신설 2009.2.23.)
라.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설 2010.2.26., 개정 2014.2.17.) 마. 신약전문대학원 (신설 2010.2.26.)
3. 특수대학원
가. 경영대학원 나. 교육대학원 다. 행정대학원 라. 보건대학원 마. 산업대학원 바. 특허법무대학원
사. 평화안보대학원 아. 국가정책대학원 (신설 2013.2.22.) 자. 스마트농업대학원 (신설 2020.12.29.)

제6조 (학부, 학과·전공) 제6조의2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등) 제7조(전임교수 등) 제7조의2(강사)

제 3 절 교수회 **제8조(교수회) 제9조(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제10조(전교 교수회)**

제 4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11조(대학평의위원회)**

제 5 절 부속시설 등 **제12조(부속시설 등) 제12조의2(도서관)**

제 6 절 행정조직 및 학무회의 **제13조(행정조직) 제14조(학무회의)**

제 7 절 위원회

제15조(대외협력추진위원회) 제16조(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제17조(대학원위원회) 제17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제17조의3(대학원장위원회) 제17조의4(재정위원회) 제17조의5(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제17조의6(연구진흥위원회) 제18조(기타위원회)

제 3 장 대학·대학원 학사일반

제 1 절 학생정원 및 학위과정

제19조(학생정원 등)

제20조(학위과정)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과정을 두며,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는 일반과정,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을 둔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1.12.28., 2014.2.17.)

1. 학사학위과정: 각 대학 (개정 2017.2.28.)
2. 석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개정 2014.2.17.)
3. 전문석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개정 2022.8.31)
4. 박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개정 2014.2.17., 2022.8.31)
5. 전문박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② 일반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및 신약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한 과정(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4.2.17., 2022.8.31)

③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1조의2(학위과정의 통합) 제22조(학위종류 및 중별)

제 2 절 입학과 등록 제23조(입학절차 및 시기) 제23조의2(입학취소) 제24조(등록)

제 3 절 수 업

제25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학기 및 동기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26조(수업일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은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제27조(수업시간표) 제28조(수업방법) 제29조(휴업 및 방학)

제 4 절 시험과 성적

제30조(시험) ① ②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급제점 이상의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8.28, 2015.4.14) ③ 교과목별로 당해 학기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자가 군 입대휴학과 임신출산육아를 위하여 휴학(이하 “육아휴학”이라 한다)한 경우, 창업을 위하여 휴학(이하 “창업휴학”이라 한다)한 경우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시험개시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2012.12.20, 2013.7.30, 2014.8.28, 2015.4.14)

제3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학업성적은 각 대학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대학은 D°급 이상을, 대학원은 C°이상을 급제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 과정은 D°이상을 급제점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9.2.23, 개정 2011.5.17., 2021.12.30., 2022.8.31.)

등 급	백분율점수(실 점)	평 점	등 급	백분율점수(실 점)	평 점
A ⁺	95 ~ 100	4.5	C ⁺	75 ~ 79	2.5
A ^o	90 ~ 94	4.0	C ^o	70 ~ 74	2.0
B ⁺	85 ~ 89	3.5	D ⁺	65 ~ 69	1.5
B ^o	80 ~ 84	3.0	D ^o	60 ~ 64	1.0
			F	60점 미만	

제 5 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2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2년,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약학대학 약학과는 6년으로 한다. (개정 2009.2.23., 2011.5.31., 2013.2.22., 2017.2.28., 2021.4.30.)

② 약학대학 약학과에 편입학(이하 “2+4년제”라 한다)한 경우의 전공교육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3.2.22, 2021.4.30.)

③ 졸업소요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중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이내에 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1.5.31, 개정 2013.2.22)

④ 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중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1.5.31, 개정 2013.2.22)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10.7, 2013.2.22)

⑥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개정 2013.2.22)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2)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4조(장애인 학생)

제 6 절 휴·복학, 제적, 자퇴 (개정 2009.7.1)

제35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09.7.1, 개정 2014.8.28)

②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후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22.8.31.)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2.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3. 육아휴학 기간

4. 창업휴학 기간

5.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6.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상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개정 2009.7.1, 2012.12.20., 2013.7.30., 2020.5.14.) ④

제3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복무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35조 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 중이라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8.28.)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개정 2007.12.6., 2009.2.23., 2009.7.1., 2011.3.15., 2011.5.17., 2013.2.22., 2019.8.6., 2019.9.10. 2020.9.8. 2021.2.25.)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4.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5. <삭제>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의과대학 의학과외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개정 2022.8.31.)
8.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9.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외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이 경우 학년 유급자는 2개 학기를 유급한 것으로 산정한다
10.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11. 제10호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이 경우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2. 질병 또는 그 밖에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사유로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요청한 자
13. 사망한 자

제38조(자퇴)

제 7 절 등록금 및 장학

제39조(등록금)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시기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3.15)

제40조(휴·복학자의 등록금) ①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휴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3.15., 2021.4.30.)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반환 기준은 제42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1.4.30.)

③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며, 2분의 1 경과 후에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9.2.23., 2011.3.15., 2021.4.30.)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휴학 후 복학한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휴학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9.2.23., 2011.3.15., 2021.4.30.)

1.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자
2.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총장이 특별히 허가하여 휴학한 자

⑤ 복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

제41조(결석자 등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15)

제4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3.15. 2020.9.8.)

1.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학 중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등록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학금은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3.15, 2021.4.30.)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42조의2(반환사유 발생일의 결정)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일과 자퇴일 중 학기개시일로부터 경과 기간이 많은 날짜를 반환사유 발생일로 한다. 휴학 및 복학이 반복되어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2.28.]

제43조(등록금 감면) 제44조(신청 학점 수에 의한 등록금) 제45조(장학금 지급)

제 8 절 정원 외 학생 및 공개강좌 제46조(정원의 학생) 제47조(공개강좌)

제 4 장 대학 학사운영

제 1 절 입학(재·편입학 포함)자격 및 입학전형
제48조(입학자격) 제49조(재·편입학) 제50조(입학전형) 제50조의2(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 2 절 전공(학과)배정 및 전과

제51조(소속전공의 배정)

제52조(전과)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2학년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하 “전과”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른 학과에서 옮겨오는 전입과 다른 학과로 옮겨가는 전출로 구분한다.(개정 2009.7.1, 2012.12.20., 2013.5.24., 2017.11.20.)

②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2.5점 이상이고 학칙 제59조제5항에서 정한 직전 학년의 수료인정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제2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3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3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4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4년 미만인 학과(전공)에 전입할 수 없다.(신설 2013.5.24., 개정 2017.11.20.) ④

⑤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허가 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 5.24)

⑥ 편입학한 자에게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24) ⑦ ⑧

제 3 절 교육과정

제53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5.2.16.)

②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은 학기당 15시간(평가시험시간을 포함)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 및 기타 총장 이 지정하는 과목의 1학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음악분야의 전공실기 교과목과 수업일수를 단축하였거나 휴업하였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54조(영역별 소요학점 및 이수학점) ① **교양 과정의 졸업소요학점 배점기준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직설치학과와 교직이수자 및 사범대학, 약학대학 약학과(2+4년제),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자유전공학부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야간과정)은 36학점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2011.2.22., 2015.2.16., 2023.6.27.)

② 교양과정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54조의2(기초과정) (삭제 2015.2.16)

제55조(전공과목) 전공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은 당해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의 100분의 6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56조(융합학과의전공) ①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1. **복수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6.2.19.)
 2. **연계전공** :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개정 2009.7.1)
 3. **자기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
 4. **산학융합전공** : 2이상의 학과(부)가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신설 2016.2.19.)
 5. **부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신설 2016.2.19.)
-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2015.2.16., 2016.2.19.)
- ③ 제1항 ★제5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며, **주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2.19.)
- ④ 제1항 각 호 전공의 이수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항 변경 2016.2.19.)

제56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 내용의 전문화·집중화와 학습 기간의 단기화에 초점을 맞춘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2.25., 개정2022.2.28., 2023.8.7.)

제56조의3(융합전공)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내·외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임교원이 국내·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

② 융합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2.28.]

제57조(부전공) (삭제 2016.2.19.) **제58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제58조의2(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제 4 절 졸업 및 수료학점

제59조(졸업 및 수료 소요학점) ① **대학의 졸업소요학점은 130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대학명	학점	관련 학과(전공)
사범대학	140	국어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142	수학교육과
	150	영어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공과대학	166	건축학 전공(5년제)
약학대학	168	약학과(2+4년제)
	232	약학과
의과대학	164	의학과
수의과대학	160	수의학과

(개정 2009.7.1, 2009.9.14, 2011.2.22, 2011.3.15, 2011.5.31, 2011.12.28, 2013.5.24, 2014.2.28, 2017.2.28, 2021.4.30.)

② 의예과 및 수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이수한 전체 교과목(복수전공부전공을 포함한다)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의예과는 2.0)이고, 따로 정하는 **미래설계 상담제 관련 교과목,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2017.2.28., 2019. 9. 10.)

⑤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약학대학 약학과(2+4년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다.

수료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졸업소요 학점						
130학점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		
140학점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		
142학점	36학점	71학점	107학점	142학점		
145학점	36학점	72학점	109학점	145학점		
147학점	36학점	73학점	110학점	147학점		
150학점	37학점	75학점	112학점	150학점		
160학점	40학점	80학점	120학점	160학점		
164학점	41학점	82학점	123학점	164학점		
166학점	33학점	66학점	99학점	132학점	166학점	
168학점			42학점	84학점	126학점	168학점
232학점	38학점	76학점	118학점	160학점	202학점	232학점
의(수의)예과	36학점	72학점				

제 5 절 학점 이수 및 인정

제60조(이수학점의 범위) 제61조(학점의 인정) 제62조(재입학자의 학점) 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

제64조(전과한 자의 학점) 전과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당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9.7.1)

제65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성적경고) ① 매 학기 성적평균평점(대학원 수강신청 학점은 제외)이 ★1.75(의예과는 2.0)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2.22., 2019. 9. 10.)

1.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 제1학기 및 제2학기(이하 “정기학기”라 한다) 재학 중 각각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국내·외 대학 교류자 포함)
3. 정기학기 이외 수강신청자
4. 휴학 중 국외대학 교류자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유급)

제 6 절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제6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당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하더라도 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0.7.28., 개정 2017.11.20.)

⑤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별표 10에서 정한 당해 학사학위(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게는 영문학위증(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9.2.23, 개정 2012.12.20)

②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시기는 각 전공을 모두 이수한 때로 한다.

제70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제70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①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② 제1항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또는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6.> [본조신설 2009. 7. 1.]

제71조(졸업의 취소)

제 7 절 시간제 등록생 제72조(시간제 등록생) 제73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점 신청 등) 제74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위수여)

제 5 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 1 절 입학(재입학 포함)자격 및 입학전형 제75조(입학자격) 제76조(재입학) 제76조의2(편입학) 제77조(입학전형)

제 2 절 전공의 변경 및 전과 제78조(전공의 변경) 제78조의2(전과)

[제78조개정 2013.12.30]

제 3 절 교육과정 제79조(교육과정) 제79조의2(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79조의3(융합전공)

제 4 절 졸업 및 수료학점 제80조(대학원의 수료학점)

제 5 절 학점 이수 및 인정 제81조(다른 학교의 학점인정) 제82조(학점인정시기) 제83조(이수학점) 제83조의2(성적경고 및 유급)

제 6 절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제84조(졸업논문) 제85조(학위수여) 제85조의2(수료자의 등록 등) 제8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87조(학위수여 취소)

제 6 장 학생활동 및 지도

제88조(교칙준수) 제89조(공결) 제90조(포상) 제91조(학생자치기구) 제92조(학생지도) 제93조(간행물) 제94조(금지행위) 제95조(징계)

제96조(자체평가)

제 7 장 자체평가

제 8 장 학칙개정

제97조(학칙의 개정) 제97조의2(제 규정의 개폐)

제 9 장 보칙

제98조(위임사항)

[별표 2]<개정 2006.12.7, 2007.12.6, 2009.2.23, 2009.9.14, 2009.12.7, 2010.2.26, 2011.2.22, 2011.5.31, 2011.12.28, 2012.12.20, 2013.2.22, 2014.2.17, 2014.6.25, 2015.2.16, 2016.2.19, 2017.2.28, 2018.2.28, 2018.5.16, 2019. 8. 6, 2020. 2. 26, 2020.12.29, 2021.8.30, 2022.2.28, 2022.8.31, 2022.11.21, 2023.2.23, 2023.6.27, 2023.10.13, [2024.1.22](#)>

대학·대학원의 학부·학과·전공 설치현황(제6조제1항 관련)

1. 대학

대학명	학과(전공)	비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	
	12개 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부, 도시·자치융합학과	
	1개 학부, 7개 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11개 학과	
경상대학	경제학과, 경영학부, 무역학과	
	1개 학부, 2개 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융합학부,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학과,	
	2개 학부, 15개 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농업경제학과	
	1개 학부, 10개 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1개 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2개 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학과	
	3개 학과	
예술대학	음악과(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과(관악전공, 현악전공), 회화과(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과, 디자인창의학과(도자·섬유디자인전공, 시각·제품디자인전공)	
	5개 학과(9개 전공)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2개 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건설교육학과, 기계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10개 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1개 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생명정보융합학과	
	3개 학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전공,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 공공안전학전공)	
	1개 학부(3개 전공)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해양안보학전공(계약학과)	
	1개 학부(1개 전공)	
국제학부	국제학부	
	1개 학부	
합계	94개 [6개 학부, 84개 학과, 4개 전공]	

- ※ 산출 기준
- 단과대학 수: 17개(자유전공학부, 국가안보융합학부, 국제학부 포함)
 - 학과 수: 94개
 - 학과: 84개
 - 학부: 6개(행정학부, 경영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융합학부, 동물자원과학부, 국제학부)
 - 전공: 4개(인문사회과학전공,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 공공안전학전공, 국토안보학전공)
 - 계약학과(국가안보융합학부 해양안보학전공) 및 예술대학 세부전공 9개는 전공 수에 포함하지 않음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일반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학과	계열	학과
인문사회 계열 (28개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치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농업경제학과, 국가안보융합학과, 법학과	인문사회 계열 (30개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치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농업경제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국가안보융합학과
자연과학 계열 (24개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화학과, 생화학, 생명과학과, 농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응용생물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농화학과, 농업기계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학과, 지구환경·우주융합학과, 축산환경학과	자 과학 계열 (23개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화학과, 생화학, 생명과학과, 농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응용생물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농화학과, 농업기계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학과, 지구환경·우주융합학과
공학계열 (18개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용융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건축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18개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용융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건축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예·체능계열 (7개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음악과, 관현악과, 디자인창의학과	예·체능계열 (4개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디자인창의학과
의학계열 (4개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수의과학과	의학계열 (4개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수의과학과
5 계열	81개 학과	5 계열	79개 학과

○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의공학과, 기록학과, 언어병리학과, 약무임상약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바이오빅데이터학과, 의생명융합학과, 지역사회디자인학과, 융합기계시스템레이션 안전과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환경IT융합공학과, 여성젠더학과, 바이오AI융합학과, 리더십융복합학과 , 기술실용융합학과, 지식재산융합학과	의공학과, 보건학과, 기록학과, 언어병리학과, 군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약무임상약학과, 국제지역학과, 국가정책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환경IT융합공학과, 여성젠더학과, 바이오AI융합학과, 기술실용융합학과, 지식재산융합학과
17개 과정	16개 과정

○ 학연산업융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연구소 (원)	연구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G R&D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농촌진흥청, (주)KT산하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호남석유화학(주)대덕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애경산업(주)중앙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G R&D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농촌진흥청, (주)KT산하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호남석유화학(주)대덕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애경산업(주)중앙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4개 연구소	24개 연구소

■ 전문대학원

대학원명	학과[전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기초과학전공, 응용과학전공]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학과[신에너지소재전공, 신에너지공정전공]
신약전문대학원	신약개발학과[신약개발학전공]

■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학과[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및 정책전공, 교육심리 및 교육과정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프랑스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일본어교육전공, 일본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간호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기계공학교육전공, 화공생명교육전공, 건설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교육전공, 소프트웨어융합교육전공, 교육관찰실용전공, 수학교육습득전공, 청어유아영어교육전공, 영어교사직업전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자치행정학전공, 통일북한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전공]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식품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바이오융합학과, 외식산업학과
특허법무대학원	특허법학과 [특허법무전공], 일반법학과 [일반법무전공]
평화안보대학원	국제학과 [국제지역 및 교류협력전공, 국제통상 및 문화전공] 군사학과 [군사학전공, 군수획득관리전공, 군상감시전공] 과학수사학과 [범죄수사학전공, 과학수사학전공] 재난정책학과[재난정책 전공]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도시·환경정책전공, 과학기술정책전공, 농식품정책전공, 경제통상정책전공, 사회문화정책전공]
스마트농업대학원	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과[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전공]

[별표 9]<개정 2006.12.7, 2007.12.6, 2009.2.23, 2009.9.14, 2010.2.26, 2011.2.22, 2011.12.28, 2013.2.22, 2014.2.17, 2015.2.16, 2016.2.19, 2017.2.28, 2018.2.28, 2019. 8. 6, 2020. 2. 26, 2020.12.29, 2021.4.30, 2021.8.30, 2022.5.31, 2022.11.21, 2023.6.27>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제19조 관련)

1. 대학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편제정원	비 고
		2024	2023	2022	2021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39	39	39	39	156	
	영어영문학과	74	74	74	74	296	
	독어독문학과	34	34	34	34	136	
	불어불문학과	27	27	27	27	108	
	중어중문학과	37	37	37	37	148	
	일어일문학과	22	22	22	22	88	
	한문학과	21	21	21	21	84	
	언어학과	20	20	20	20	80	
	국사학과	19	19	19	19	76	
	사학과	28	28	28	28	112	
	고고학과	18	18	18	18	72	
	철학과	32	32	32	32	128	
	소계	371	371	371	371	1,484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29	29	29	28	115	
	문헌정보학과	24	24	24	23	95	
	심리학과	29	29	29	28	115	
	언론정보학과	31	31	31	31	124	
	사회복지학과	22	22	22	22	88	
	정치외교학과	29	29	29	28	115	
	행정학부	60	60	60	93	273	
	도시자치융합학과	24	24	24	-	72	
	소계	248	248	248	253	997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74	74	74	74	296	
	정보통계학과	30	30	30	30	120	
	물리학과	61	61	61	61	244	
	천문우주학과	30	30	30	30	120	
	화학과	71	71	71	71	284	
	생화학과	30	30	30	30	120	
	지질환경과학과	44	44	44	44	176	
	해양환경과학과	30	30	30	30	120	
	스포츠과학과	38	38	38	38	152	
	무용학과	23	23	23	23	92	무용학과(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 발레전공)
	반도체융합학과	60				60	
	소계	491	431	431	431	1,784	
경상 대학	경제학과	60	60	60	60	240	
	경영학부	227	227	227	227	908	
	무역학과	45	45	45	45	180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	-	-	12	12	
	소계	332	332	332	344	1,340	
공과 대학	건축학과(5년제)	27	27	27	27	135	건축학과(5년제), 편제정원에 '19학년도 입학정원(27명 포함)
	건축공학과	-	-	24	27	51	
	토목공학과	46	46	46	46	184	
	환경공학과	38	38	38	38	152	
	기계공학부	103	103	103	103	412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7	37	37	37	148	
	선박해양공학과	-	-	30	34	64	
	항공우주공학과	39	39	39	39	156	
	전기공학과	45	45	45	45	180	
	전자공학과	52	52	52	52	208	
	전파정보통신공학과	64	64	64	64	256	
	컴퓨터융합학부	104	114	114	121	453	
	신소재공학과	79	79	79	79	316	
	유기재료공학과	82	82	82	82	328	
	융합화학공학과	81	81	81	81	324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50	54	40	40	184	
	자율운행시스템공학과	52	57	30	30	169	
	인공지능학과	40	40	40	40	160	
	에너지공학과	40				40	
	소계	979	958	971	985	3,920	
농업	식물자원학과	27	27	27	27	108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편제정원	비 고
		2024	2023	2022	2021		
생명 과학 대학	원예학과	26	26	26	26	104	
	산림환경자연학과	26	26	26	26	104	
	환경소재공학과	24	24	24	24	96	
	동물자원과학부	59	59	59	59	236	
	응용생물학과	27	27	27	27	108	
	생물환경화학학과	28	28	28	28	112	
	식품공학과	27	27	27	27	108	
	지역환경토목학과	26	26	26	26	104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7	27	27	27	108	
	농업경제학과	29	29	29	29	116	
	소계	326	326	326	326	1,304	
약학 대학	약학과	50 -	50 {50}	50 {50}	50 {50}	150 {50}	-입학정원 · 약학과 6년제 : '22~'24학년도 신입학 각 50명 · 약학과(2+4) : '22~'23학년도 편입학 각 50명(정원외)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3~'24)입학정원 합 <>의학과 본과 인원 -'18~'21년 의예과 입학생이 현재 본과 학생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4~'23)입학정원 합 <>의학과 본과 인원
	소계	50 -	50 {50}	50 {50}	50 {50}	150 {50}	
의과 대학	의예과	110	110	110	110	220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3~'24)입학정원 합 <>의학과 본과 인원 -'18~'21년 의예과 입학생이 현재 본과 학생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4~'23)입학정원 합 <>의학과 본과 인원
	의학과	<110>	<110>	<110>	<110>	<440>	
	소계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220 <440>	
생활 과학 대학	의류학과	37	37	37	37	148	
	식품영양학과	33	33	33	33	132	
	소비자학과	24	24	24	24	96	
	소계	94	94	94	94	376	
예술 대학	음악과	37	37	37	37	148	
	관현악과	25	25	25	25	100	
	회화과	26	26	26	26	104	
	조소과	14	14	14	14	56	
	디자인창의학과	25	25	25	25	100	
	소계	127	127	127	127	508	
수업과 대학	수의예과	54	54	54	54	108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3~'24) 입학정원 합 <>수의학과 본과 인원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3~'24) 입학정원 합 <>수의학과 본과 인원
	수의학과	<54>	<54>	<54>	<54>	<216>	
	소계	54 <54>	54 <54>	54 <54>	54 <54>	108 <216>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	13	13	13	52	
	영어교육과	13	13	13	13	52	
	수학교육과	14	14	14	14	56	
	교육학과	15	15	15	15	60	
	체육교육과	20	20	20	20	80	
	건설공학교육과	20	20	20	20	80	
	기계공학교육과	30	30	30	30	120	'23학년도 모집단위 변경(구, 기계·재료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 공학교육과	30	30	30	30	120	
	화학공학교육과	15	15	15	15	60	
	기술교육과	30	30	30	30	120	
	소계	200	200	200	200	800	
간호대학	간호학과	90	90	90	90	360	
	소계	90	90	90	90	360	
생명시스템 과학대학	생물과학과	41	44	45	46	176	
	미생물 분자생명 과학과	28	30	30	31	119	
	생명정보융합학과	26	26	26	26	104	
	소계	95	100	101	103	399	
자유전공 학부	인문사회과학 전공	14	14	14	14	56	
	리더십과조직학 전공	14	14	14	14	56	
	공공안전학전공	15	15	15	15	60	
	소계	43	43	43	43	172	
국가안보 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30	30	30	30	120	
	소계	30	30	30	30	120	
국제학부	국제학부	12	20	20	-	52	
	소계	12	20	20	-	52	
신입학 정원 소계		3,652	3,584	3,598	3,561	14,094	-편제정원(가로): '21~'22학년도 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19 건축학 27명 포함
편입학 정원 소계		-	{50}	{50}	{50}	{50}	('22~'23) 의학과 {50} : 입학 포함, 편제 제외(정원외) ('21학년도) 의학과 {50} : 입학 편제에 모두 포함
의학과 수의학과 소계		<164>	<164>	<164>	<164>	<656>	의학과, 수의학과 입학에 제외, 편제에 포함
합 계		3,652	3,634	3,648	3,611	14,800	-입학정원 신입학+편입학 -편제정원 신입학+편입학 + '19건축27+의학·수의학 -'21~'22의예과/수의예과

학 위 중 별(제22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관련)

1. 대학

학위 중별	졸업대학	학 과(부)
문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
	자기설계전공	고전문화창의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전공,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
	연계전공	공동사회, 도덕·윤리, 충청학·백제학
교육학사	사범대학	교육학과
문헌정보학사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 학 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기초과학부, 수학·정보통계학부, 물리·천문우주과학부, 화학·생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반도체융합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과학과, 미생물 분자생명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생명정보융합학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과학기술전공)
	연계전공	생물정보학(삭제), 통합과학, 기초의과학
체육학사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무용학사	자연과학대학	무용학과
경제학사	경상대학	경제학과, 경제·무역학부(경제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경영학사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무역학과('08이전 입학자)
무역학사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무역전공), 무역학과('09이후 입학자)
	연계전공	글로벌이트레이드(삭제)
공 학 사	공과대학	건축공학과(4년),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정밀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정보통신공학부, 공업교육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나노공학부, 바이오응용화학부, 토목환경공학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 유기재료공학과, 컴퓨터융합학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자율융합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에너지공학과
	사범대학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공학사	산학융합전공	에너지공학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공학부,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연계전공	나노기술(삭제), 의공학(삭제), 목조건축및인테리어디자인, 감성인공지능웨어러블전공, 국방무인시스템전공(삭제), 환경CT전공, 반도체융합전공
	공유대학	친환경동력시스템전공, 지능형전계제어시스템전공, 첨단센서융합디바이스전공,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소부장 전공, 자율주행시스템전공,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전공, 차세대통신융합전공, 모빌리티SW/AI융합전공
건축학사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학과
농 학 사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동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식물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연계전공	과채·특용작물영농창업전공
수의학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법 학 사	법과대학	법학부
행정학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행정학부, 도시자치융합학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공공안전학전공)
정치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약 학 사	약학대학	약학과
의 학 사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생활과학사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학과
음악학사	예술대학	음악과, 관현악과
미술학사	예술대학	회화과, 조소과, 산업미술학과, 디자인창의학과
군사학사	국방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해양안보학전공(계약학과), 항공우주안보학전공
지역학사	연계전공	미국지역학, 중국통상, 유럽지역학
식품생명공학사	연계전공	식품플로티어바이오
교육공학사	연계전공	교육공학
환경조경학사	연계전공	환경조경학
국제학사	경상대학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연계전공	국제학
	국제학부	국제학부
인문콘텐츠학사	연계전공	인문콘텐츠
아시아비즈니스학사	연계전공	아시아비즈니스
의약생명학사	연계전공	의약생명학
스마트이트레이드학사	연계전공	스마트이트레이드전공
정보공학사	연계전공	지식생태전공
언어공학사	연계전공	언어정보처리전공
통일학사	연계전공	통일리더십과개발협력전공
창업학사	연계전공	미래기술창업학전공
과학기술행정융합학사	연계전공	과학기술·행정융합학전공
바이오AI융합학사	연계전공	바이오AI융합전공
스포츠심리상담학사	자기설계전공	스포츠심리상담전공
지식재산학사	연계전공	지식재산융합전공